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변경) 보고



구 미 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변경) 보고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4. . .

제출자 : 구미시장

1. 보고이유

지자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 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기본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의회 보고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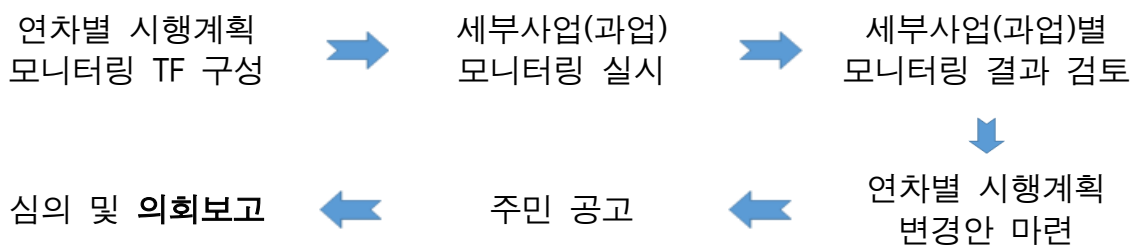
2. 주요내용

가. 사무명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나. 추진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8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4조

다. 계획 변경 과정



라. 추진일정

연번	시기	내용	비고
1	2024. 4월	▶ 이행점검 모니터링 TF 구성 (30명)	
2		▶ 사전교육 실시 (2회)	
3	5~8월	▶ 이행점검 모니터링 실시	
4	9월	▶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심의	
5	11월	▶ 의회 보고	
6	12월	▶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변경) 도 제출	

마. 2024년 당초 연차별 시행계획 대비 변경내용

▷ 폐지 : 2개 사업 ▷ 신설 : 2개사업

사업 번호	사업명	변경 유형	변경 사유	비고
I -3-2	고위기 청소년 안전망 사업	폐지	국비 예산 삭감에 따른 폐지(국비공모사업)	
I -3-9	청소년 위기대응 및 예방프로그램	신설	I -3-2 사업폐지에 따라 보완적 사업	
Ⅱ-2-1-2	자봉이의 날 운영	폐지	단순행사성 사업으로 인한 폐지	
Ⅱ-2-1-3	구미시가족자원 봉사단 운영	신설	Ⅱ-2-1-2 자봉이의 날 사업 폐지에 따라 보완적 사업	

▷ 변경 : 32개 사업 48건

연번	구분	건수	변경 사유	비고
1	지원대상	2	수요 변화	
2	사업내용	8	내용 명확화, 사업명 변경, 전달체계 변경	
3	사업비	23	자원 및 예산, 수요 변화	
4	성과목표	10	자원 및 예산 변화, 내용 명확화	
5	성과지표	5	전달체계 및 수행기관 변경	

바.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사업

▷ 8대 추진전략, 44개 세부사업

추진 전략	분야 (8)	세부사업(과업)명 (44)	비고
1	사회안전망 구축 (7)	찾아가는 이동 복지관 운영	중점
		누구에게나 희망이 되는 구미 희망더하기 사업	중점
		세이프티(Safety) 존(Zone) 설치	
		여성 안심 택배 보관함 운영	
		찾아가는 이동 건강 버스 운영(찾아가는 행복병원)	
		사회참여를 위한 바우처 택시 운영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사업	
2	안정적 일자리 보장 (7)	구미형 청년일자리 사업	중점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중점
		아이 행복 도우미 사업	
		감정노동자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지역 실업자 직업 훈련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사업	
		구미 50+센터 구축 및 운영	
3	구미형 돌봄체계 구축 (7)	아픈 아이 돌봄센터 운영	중점
		육아공동체 자녀 돌봄 품앗이 활성화 사업	중점
		장애인 긴급돌보미 지원	
		인공지능(AI) 반려로봇 효돌이 관리 운영	
		마을공동체 노인 돌봄 사업	
		청년 고민 상담소 운영	
		청소년 위기대응 및 예방 프로그램	
4	교육.문화 (7)	주민주도형 인문마을 공동체 조성 사업	중점
		자원봉사대학 운영	중점
		세대공감 구미독서문화, 구독	
		구미시 진학·진로 지원센터 운영	
		구미 복지서비스전 운영	
		어르신 디지털 배움터 운영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사업 운영	
5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4)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역량 강화 사업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	
		부적정 수급 방지를 위한 역량 강화 사업	
		부적정 수급 방지 홍보활동	
6	지역사회 민관협력 (4)	자원봉사 행복 온(溫/ON)마을 만들기 사업	
		구미시가족자원봉사단 운영	
		사회공헌지원센터 운영	
		공유냉장고 운영	
7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4)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심의기능 강화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역량 강화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공유 보고회	
8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4)	독서문화 증진을 위한 도서관 건립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운영	
		공공부문 사회복지 전문인력 충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사업	

관계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해당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제40조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시·도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출된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⑦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이하 “지역사회보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변경)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의 환경 변화,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경 절차는 제35조를 준용한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절차 및 제출시기)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5조제7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의 결과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에 대한 보고(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를 거쳐 확정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각각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이하 “시·도사회보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해당 시·도 의회에 대한 보고를 거쳐 확정된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1월 31일까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4조 (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임명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과 사회보장업무 담당국장·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면·동 협의체 민간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입 안 자	과 장	강 명 천
	팀 장	이 현 숙
	담 당 자	안 영 순 (480-5102)